

도 메 인 분 쟁

최상위 도메인(.com, .org, .net 등)에 대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상위 도메인 등록에 대한 분쟁은 국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과 국제분쟁해결기구에 의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양자는 도메인 분쟁에 대한 판단기준과 결정내용이 차이가 있다. 국제분쟁해결기구(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ICANN, 캐나다에 위치한 e레졸루션사 등 3개의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에 의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는 신속성, 전문성, 낮은 비용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는 '도메인의 악의적 등록자(사이버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우선 도메인 네임이 분쟁해결을 신청하는자(이하 상표권자라고 한다)에게 권리가 있는 등록상표(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정도로 유사하고 △도메인 네임 소유자가 해당 도메인 네임에 대한 권리 또는 합법적 이해관계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등록된 도메인 네임이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도메인 네임의 악의적등록'으로 보고 이런 경우 도메인 네임의 말소나 도메인 네임의 이전 결정을 내린다(국내 법원은 도메인 네임의 이전결정은 내리지 않는다).

특히 도메인 네임을 상표권자나 그 경쟁자에게 대기를 받고 판매 등을 하려고 제안하는 경우를 비롯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도메인 네임 소유자의 웹사이트 등으로 인터넷 사용자를 유혹해 재정적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상표권자가 상표를 도메인 네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메인 네임등록을 한 경우, 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경우 등이 도메인 네임의 악의적 사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도메인 네임의 말소나 이전을 구하려는 상표권자는 국제분쟁해결기구에 이상의 절차를 입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물론 도메인 네임 등록자는 자신이 도메인 네임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고 자신의 도메인 등록이 선의의 도메인 등록임을 항변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기구의 최종적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0일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원칙적으로 도메인 네임 등록자의 거주국 법원과 도메인 네임 등록기구의 소재지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결정의 집행을 막을 수 있다.

도메인 네임 말소 또는 이전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도메인 네임 등록자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분쟁해결기구의 기준보다 도메인 네임 등록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된 한글도메인은 최상위 도메인이기 때문에 위 두 가지의 분쟁해결방법이 모두 가능한데, 국제분쟁해결기구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도메인 네임 등록자에게 유리한 국내 법원을 통해 최종적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는 영업주체의 혼동여부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발특2001·1)

